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13
----------	-------

발의연월일 : 2026. 8. 18.

발 의 자 : 정진욱 · 이정문 · 조인철
이강일 · 안도걸 · 김남희
이개호 · 정준호 · 오세희
복기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소송 관계인들이 공소장, 의견서를 비롯한 소송서류의 작성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이른바 ‘할루시네이션 현상’에 따라 실제와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판례 등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거짓 정보를 그대로 믿을 수 있어 활용 범위나 윤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허위 법령이나 판례가 소송서류에 제출되면 상대방은 그 진위를 일일이 확인하고 반박하여야 하고, 재판부 역시 해당 자료의 존재 여부와 인용 내용의 정확성을 별도로 검증하여야 함. 이로 인해 불필요한 심리가 늘어나 재판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법률정보에 대한 접근과 대응 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나아가

허위 정보가 재판 초기부터 핵심 쟁점을 흐릴 경우 한정된 사법자원이 낭비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과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음.

이에 피고인, 변호인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법령, 판례 또는 유권해석 등의 주요내용을 허위로 인용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령 등을 인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피고인, 변호인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공소장, 의견서 등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서류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검색한 법령 등을 인용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며, 서면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령이 인용되었거나 허위로 인용된 경우, 인공지능 활용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재판장이 그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9조의2 신설 등).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9조의2부터 제29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9조의2(인용 오류에 대한 제재) ① 피고인, 변호인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법원의 판결·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행정심판 재결, 행정청의 유권해석, 논문, 그 밖의 관련 자료(이하 “법령등”이라 한다)를 인용하거나 그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99조의3(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실의 기재) 검사, 피고인, 변호인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검색한 법령등을 공소장, 의견서 또는 그 밖의 소송서류에 인용한 경우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실을 해당 서면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99조의4(소송서류 제출자의 검증의무) ① 검사, 피고인, 변호인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서류에 기재한 법령등의 주요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피고인, 변호인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확인 여부 및 그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99조의5(진술의 제한)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제출한 공소장, 의견서 또는 그 밖의 소송서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기재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진술을 제한할 수 있다.

1.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령등을 인용하거나 그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한 경우
2. 제299조의3을 위반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99조의2(인용 오류에 대한 제재) ① 피고인, 변호인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법원의 판결·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행정심판 재결, 행정청의 유권해석, 논문, 그 밖의 관련 자료(이하 “법령등”이라 한다)를 인용하거나 그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u> <u>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299조의3(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실의 기재) 검사, 피고인, 변호인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검색한 법령등을 공소장, 의견서 또는 그 밖의 소송서류에 인용한 경우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실을 해당 서면에 기재하여</u>

<신 설>

<신 설>

야 한다.

제299조의4(소송서류 제출자의
검증의무) ① 검사, 피고인, 변
호인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서류에
기재한 법령등의 주요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검사, 피고인, 변호인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확인 여부 및 그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하
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
게 할 수 있다.

제299조의5(진술의 제한) 재판장
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제출한
공소장, 의견서 또는 그 밖의
소송서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기재된 사
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진술을 제한할 수 있다.

1.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령등을
인용하거나 그 주요 내용을

	<u>허위로 인용한 경우</u> <u>2. 제299조의3을 위반하여 인공</u> <u>지능 기술의 활용 사실을 기</u> <u>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u> <u>기재한 경우</u>
--	--